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제2021-25호

2021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8.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21. 2. 8.(월) 09:00 ~ 예산 소진 시

나. 사업규모 : 7,894백만원 ※ 단, 사업추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 12. 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라.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표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함
  - ✔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
  - ✔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 서류 발급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증빙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영업용 차량,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은 전산에서 자동 확인)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신차구매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차량	600	70% (최대 420만원)	30% (최대 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2)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3)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자(공동명의 소유자 포함)의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지급 제한

※ 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거나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에 따른 운행제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운행제한 포함)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처분 유예 중인 차량은 적용하지 않음

마.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 신차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가.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1) 사업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시 보조금 지원

※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는 보조금 지급 제외

2) 지원대상

<조기폐차 지원대상> ※ 아래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별첨1)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1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3) 선정방법 : 선착순

4) 신청방법 : ① ~ ③ 중 선택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등기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e-mail 접수 : 1577-7121@aea.or.kr
○ 제출서류(사본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1부
-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1부)
- 자동차 정기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② 조기폐차 전문폐차업체(별첨2)에 접수 대행 의뢰 수수료 없음

③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선택)
- 사업 시행일 이후부터 접수 인정, 공고 시행 이전 기 접수자는 재 접수하여야 함

나.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추가 지원

1) 사업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시 추가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 차량 소유자와 신차 구매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신차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이후 등록한 차량(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한 차량 포함)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2) 지원대상

<신차구매 지원대상>

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한 경우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 1. 1. 이후**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2등급 중고차량 포함. 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 제외)시 상한액 범위 내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②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한 경우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Euro6이상 차량을 `21. 1. 1. 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시 상한액 범위 내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20년도 인정

✓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감은 인정)

※ 신규 등록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변경되어 추가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3) 선정방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받은 차량소유자 중 신차구매 후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3)를 제출한 순서

4) 청구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제출서류(원본 제출)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3) 1부
-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소유자(보조사업자,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포함)의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다. 전기·수소차 구매 도비 추가지원 : 승용 200만원/대, 초소형 100만원/대

1) 처리 절차

– 보조금은 신청인(구매자)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원칙

친환경차 출고 및 경유자동차 폐차 (친환경차 구매자)	⇨	보조금 신청서 제출 (친환경차 구매자→도)	⇨	신청서 검토 후 접수여부 문자통보 (도→친환경차 구매자)	⇨	보조금 지급 익월 초 일괄지급 (도→친환경차 구매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2021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구매 도비 지원사업 공고 참고

※ 도비 추가지원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미세먼지대책과(031-8008-3546)

2) 대상 및 지원 조건

– 아래의 사항 중 공통사항 및 대상별(①, ②중 하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지원 대상		지원 조건
공통 사항		○ 2021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내 시·군에서 지원 받아 구매 ○ 친환경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2021.12.15.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0.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21.12.15. 이전인 경우에 한함 – 단, 기한 내 폐차가 불가한 경우(조기폐차 지원금 부족)에는 기한 경과 후라도 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 도내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에도 적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에 입주 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된 기업

라. 수소차 보급사업 :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21-15호 참조

마. 전기차 보급사업 : 추후 공고 예정

바. LPG화물차 지원사업 :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21-26호 참조

3 진행절차

대상확인 신청서(붙임1) 또는 저공해조치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전문 폐차장 입고	→
소유자 → 협회		협회 → 소유자		소유자 → 폐차장	
성능검사 (경유차량 상태 확인)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서(붙임2) 제출	→	보조금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협회		파주시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보조금 청구서 제출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소유자 → 협회		파주시 → 소유자	

※ 신차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후(또는 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하여야 함

※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말소등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4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파주시 결정에 따름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라.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 번복할 수 없음

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대상확인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 확인), 보조금산정, 대상차량확인(정상운행이 가능하지 확인하는 검사), 청구서 내용 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은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는 통장(계좌)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바.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사.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할 것

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자.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차. 신차구매 추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카.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

타. (재)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파.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5 문의처

○ 조기폐차 접수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보조금 지급 문의 : 파주시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031-940-3796, 4456, 3792

[별첨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별첨2]

파주시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보성폐차장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2033번길 66	031-954-4001
㈜쓰리알폐차장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2033번길 72	031-953-5031
한국ARC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79번길 60-38	031-957-0020
이화ARC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334	031-957-8329
일산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	파주시 월롱면 누현1길 53	031-944-0114
㈜새창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588번길 52	031-953-7777
파주폐차산업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132	031-953-8770
자연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487	031-946-0500
케이에스폐차산업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1128번길 41	031-944-4402
아시아오토	파주시 파평면 파산서원길 302	031-922-1647

※ 관외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확인 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 고객소통 → 고객상담안내 → 조기폐차

[붙임1]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대전화(본인)		⑤FAX	
			이메일(법인)필수	
대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평센터 우편번호 : 21344
* e-mail 접수 : 1577-7121@aea.or.kr

[붙임2]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붙임3]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붙임4] ※노란색 부분만 기재하면 됨

참여 신청서(　　)	**(ID)*** (　·숫자로 8자 이상)	**비밀번호** (9자리 이상,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1개 이상 모두 포함)
☐ 가입신청		

신청인 성명*				
세대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00조의3(고유식별정보처리)에 따름				
휴대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전자 메일				
인센티브 유형	**현금**			
신청인 금융계좌번호*	**은행 명칭**		**계좌번호**	

※ 아래 보호자란은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우편번호(　　-　　)** ☐ 상 동			

본인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 본인 가정의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집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주소·고지서 고객번호·금융정보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의 관련기관(업체)에서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거나 제3자에의 제공 및 취급위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에너지 고객번호) 처리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사항 요약

1.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 가입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에너지 고객번호(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가입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
2. 실명확인, 에너지 사용량 수신, 인센티브 제공 등 탄소포인트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상 수도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 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자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동주택 관리비 전산업체, 주택법상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 부터의 건물관리 위임 단체, 신용평가회사, 그린카드사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의 취급을 위탁 또는 개인정보 제공 후 수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활용하는 것
3. 실명확인, 탄소포인트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에너지 고객번호)를 처리하는 것